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참고자료
www.motie.go.kr

문의: 불공정무역조사팀 이상준 팀장(2110-5581), 이제오 사무관(5609), 문현철 주무관
(4916)산업피해조사팀 양원창 팀장(2110-5561), 김진주 주무관(4956)

제316차 무역위원회 개최('13.6.26) 결과
-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 -
- 돈육 가공업체에 무역조정지원 결정 -

1 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인 파슬코리아 유한회사가 피신청인들인 A, B, C 3개사를 상대로 신청한 『손목시계 상표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』 건에 대해

○ 조사대상물품들이 신청인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,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함

□ 지난 '12. 11. 28일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수입하여 판매하는 손목시계 제품(HS단위:9102(손목시계·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 시계))에 대해,

○ 신청인들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며,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행위 중지 등을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함

○ 조사결과 피신청인들이 조사대상물품을 국내에서 수입 및 판매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판매제품을 감정한 결과 신청인의 등록상표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가품인 것으로 판단함

□ 이에 따라, 피신청인 A, B, C에 대해 시정조치에 의한 해당 물품 등의 수입·판매행위 중지를 판정함

2 돈육 가공업체 무역조정지원 결정

□ 무역위원회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*을 신청한 돈육 가공업체에 대해 한-EU 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가 있었다고 판정함

*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심각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을 지정하여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

○ A업체는 돈육 가공업체로 한-EU FTA로 인한 EU산 돈육의 수입 증가에 따라 '12년 상반기 중 매출이 감소하는 등 한-EU FTA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받음

□ 무역위원회의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하며, 지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및 컨설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음

<붙임>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 1부.
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 1부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이제오 사무관(☎ 02-2110-5609), 산업피해조사팀 김진주 주무관(☎ 02-2110-495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지재권 침해 및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과징금, 시정조치명령 등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

□ **조사 절차**

조사 신청 (신청인→무역조사실)
- 누구든지, 서면신청(조사신청서+증빙자료)
-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

직권조사
- 불공정무역행위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

조사개시 결정 (무역조사실/위원회보고)
- 신청서류 구비요건 검토, 보완
- 조사신청 후 20일내 결정

잠정조치
- 회복불가능한 피해발생(우려)시

사건 조사 (무역조사실)
- 서면조사 원칙, 현지조사 가능
- 외부전문가 감정, 기술설명회 등
-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한 조사·판정

의견수렴
- 판정 전 제재조치(안)에 대한 의견수렴

불공정무역행위 판정 (무역위원회)
- 조사개시 후 6월내 판정(2월씩 2회 연장 가능)
- 피신청인의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판정
- 제재조치 수단 및 수준 결정

제재조치 시행 (무역위원회→피신청인)
- 시정조치 명령
- 과징금 부과

이의신청 (피)신청인→무역위원회)
-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내 신청

이의신청 심의·결정 (무역위원회)
- 신청일로부터 60일내 결정(30일 연장 가능)

붙임 2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요

□ **(개념)**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융자, 컨설팅 등 지원

□ **(요건)** ①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*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, ②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·서비스의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, ③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할 것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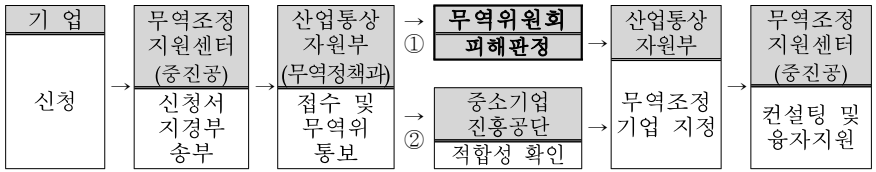
*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% 이상 감소했거나 또는 영업이익·고용·가동률·재고 등 종합적 피해가 그에 상당할 경우

□ **(절차)**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을 하면,

○ ① 무역위원회 피해판정 결과와 ② 중진공에서 실시하는 기업의 무역조정계획 적합성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여부를 결정

* 무역위원회 심의는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심의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

<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절차 >



□ **(효과)**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, 컨설팅 자금의 80%를 지원하고, 융자금은 중진공에서 기업 신용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

○ 컨설팅 자금 : 소요비용의 80% 지원(업체당 40백만원 한도)

○ 융자 : 시설자금(30억원내, 거치포함 8년), 운전자금(5억원내, 거치포함 5년)

* 기준금리는 '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3%p 차감'으로 '13년 2/4분기 현재 3.29%